



Dongguk University Since 1906
Creative Thinkers, Young Challenger, Ethical Leader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 일반 재외국민
-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 ▣ 새터민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역사를 걸으면 동국이 보이고,
동국이 걸으면 역사가 된다.

서울캠퍼스 Seoul Campus

- | | |
|-------------------|--|
| 0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 2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등록포기 |
| 0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5 등록포기, 환불, 합격취소 |
| 04 전형일정 | 26 장학제도 |
| 05 지원자격 | 30 FAQ |
| 13 전형방법 | 31 2021학년도 <재외국민 일반전형>
지원자격 변경사항 안내 |
| 15 서류제출 | 32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
| 18 지원자 유의사항 | 33 학력조회 동의서 |
| 21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34 동국대 찾아오시는 길 |
| 22 합격자 사정원칙 | |
| 23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 |

☀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모집구분		인문계/ 영화영상	자연계	예체능계 (연극)	합 계	비고
일반 재외국민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32명	20명	2명	54명	모집단위별로 선발 신입생 입학정원의 2% 이내 (정원외 모집)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48명	30명	2명	80명	모집단위별로 선발 (정원외 모집)
새터민(북한이탈주민)		48명	30명	2명	80명	

2. 전형방법

- ▶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모두 계열에 따른 동일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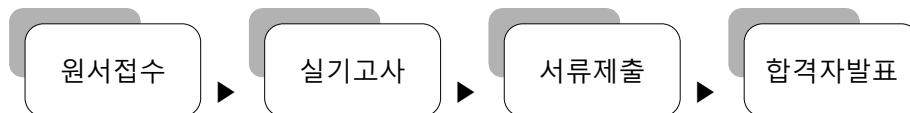
계열구분	전형형태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실기고사	면접고사	비고
인문계 · 자연계 · 예체능(영화영상학과)	1단계	인문계/ 영화영상학과	국어 50%+영어 50%	-	-	5배수 선발
		자연계	수학 50%+영어 50%	-	-	
	2단계	1단계 성적 70%		-	30%	
예체능(연극학부)	일괄전형	-		100%	-	

3. 전형절차

- ▶ 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학과



- ▶ 예체능계(연극학부)



4. 원서접수

- ▶ 기 간 : 2018. 7. 5(목) 10:00 ~ 7. 7(토) 17:00
-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모집인원		
					일반 재외국민	12년전교육 과정 이수자	새터민
불교	인문	불교학부 교직		6	-	1	1
문과	인문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6	2	2	2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 교직 , 영어통번역학 교직	8	2	3	3
		일본학과		3	1	2	2
		중어중문학과 교직		4	2	5	5
		철학과 교직		1	-	1	1
		사학과 교직		3	1	2	2
이과	자연	수학과 교직		3	1	2	2
		화학고 교직		3	1	2	2
		통계학과 교직		4	1	2	2
		물리 · 반도체과학부	물리학 교직 , 반도체과학	6	1	1	1
법과	인문	법학과 교직		12	2	3	3
사회과학	인문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교직	4	2	2	2
			행정학 교직	4	2	2	2
			북한학	1	-	1	1
		경제학과 교직		8	2	2	2
		국제통상학과		6	2	3	3
		사회 · 언론정보학부	사회학	2	-	1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5	2	3	3
		식품산업관리학과		2	-	1	1
		광고홍보학과		5	2	3	3
		사회복지학과		1	-	1	1
경찰사법	인문	경찰행정학부	경찰학, 산업보안, 범죄과학, 교정학	6	3	3	3
경영	인문	경영학과 교직		12	3	3	3
		회계학과		8	1	1	1
		경영정보학과		6	-	1	1
바이오 시스템	자연	생명과학고 교직		4	-	1	1
		바이오환경과학과		4	-	1	1
		의생명공학과		3	1	2	2
		식품생명공학과 교직		5	1	1	1
공과	자연	전자전기공학부		17	3	3	3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8	2	3	3
			정보통신공학	8	1	2	2
		건설환경공학과		5	-	1	1
		화공생물공학과		6	2	2	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	2	2	2
		건축공학부	건축공학, 건축학	6	-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7	2	2	2
		멀티미디어공학과		4	-	1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4	1	1	1
사범	인문	국어교육과		3	1	-	-
	자연	수학교육과		3	1	-	-
예술	예체능	연극학부	연극 교직 , 뮤지컬 교직	5	2	2	2
		영화영상학과 교직		4	2	2	2
계				-	54	80	80

모집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 표시된 학과(전공)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다만,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므로, 2학년 중 교직신청은 가능하나 졸업시점에 교직과정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공으로 졸업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2) 불교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되, 타 학과로 전과는 불가(복수전공은 가능)
-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행정학부, 연극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고,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결정함
- 4)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 공간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 임용자격을 참고할 것
- 5)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서울 본교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고양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 6)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와 신입생은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소속되며, 학과별 심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7)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대학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할 것
- 8)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나 실기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함
- 9) <최대모집가능인원>은 「재외국민 일반전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최대선발 가능한 인원을 의미하며, 실제 모집인원은 모집구분별 <모집인원> 참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 원칙

- 각 모집구분의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충원합니다.
-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타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또한 다른 모집단위에서 1명을 이월 받은 적이 있는 모집단위에 추가로 충원 기회가 올 경우 다음 순위의 모집단위에게 그 기회를 순차적으로 이월합니다.
(예시 : 정치행정학부의 행정학 전공 미충원 시 정치외교학 전공에서 우선 충원하되, 미충원 시 북한학 전공에서 충원해야 하나 북한학 전공 정원이 15명이므로 학부(과) 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충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학부로 충원 우선순위를 이월합니다.)
- 2) 1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3) 1번, 2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건제순으로 충원합니다.
- 전제 조건 : 일반 재외국민의 충원합격자 모집단위별 최대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합니다.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별 정원은 p.2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참고 바랍니다.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7. 5(목) 10:00 ~ 7. 7(토) 17:00	인터넷 원서접수 지원자 전원
필답고사장 안내	2018. 7. 11(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si.dongguk.edu) 게시
필답고사	2018. 7. 15(일) 오전 9:30까지 입실	▷고사시간 ▶인문/영화영상 : 10:00 ~ 11:20(80분) ▶자연 : 10:00 ~ 11:40(100분) ▷고사장소 : 동국대 서울캠퍼스 ▶고사실, 고사시간, 유의사항 등을 본교 입학처 페이지 (ipsi.dongguk.edu)에서 확인 인문/자연/영화영상학과 지원자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고사장 안내	2018. 7. 19(목)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si.dongguk.edu) 게시 인문/자연/영화영상학과 지원자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연극)실기 고사장 안내		연극학부 지원자
2단계 전형료 납부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2일간	▷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상세 안내 예정 ▷ 기한 내 2단계 전형료 미납부 시 2단계 응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 내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별도로 연락하지 않음)
면접고사	2018. 7. 21(토) 오전 08:10까지 입실	▷고사장소 : 동국대 서울캠퍼스 ▶고사실, 고사시간, 유의사항 등을 본교 입학처 페이지 (ipsi.dongguk.edu)에서 확인 인문/자연/영화영상학과 1단계 합격자
(연극)실기고사	2018. 7. 21(토) 오전 09:20까지 입실	연극학부 지원자
서류제출	2018. 7. 23(월) 10:00 ~ 7. 25(수) 17:00	▷제출장소 : 본관 2층 입학처 세미나실 ※ 우편접수 불가. 방문제출만 가능 ▶인문/자연/영화영상학과 :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제출 ▶연극학부 : 실기고사 응시자 전원
최초합격자 발표	2018. 8. 22(수) 이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si.dongguk.edu) 게시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2018. 12. 17(월) ~ 12. 19(수) 16:00	본교 지정 은행 (영업시간 내) - 가상계좌 또는 은행창구 납부 ▶등록예치금 : 400,000원 ▶본교 지정은행에 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2018. 12. 21(금) ~ 12. 26(수) 21:00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si.dongguk.edu) 게시 또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예치금 등록	2018. 12. 21(금) ~ 12. 27(목) 16:00	본교 지정 은행 (영업시간 내) - 가상계좌 또는 은행창구 납부 ▶등록예치금 : 400,000원 ▶본교 지정은행에 납부
잔여등록금 납부	2019. 1. 30(수) ~ 2. 1(금) 16:00	납부기간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si.dongguk.edu) 공지 예정

지원자격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자격 구분	세부 구분/특기사항	자격 요건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근무 공무원의 자녀	보호자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3년 또는 통산 4년 이상 재학한 자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 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영주권 취득 외국 교포 자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본인은 외국인, 부모 국적은 불문 ※ 복수국적자 지원불가	고교입학 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2개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우리나라 초·중·고(6-3-3)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결혼이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고교입학 전(한국학제 기준)에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는 영주권을,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는 원서접수 전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한국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으로 일반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예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외국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범위

구 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근무 상사주재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 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해당국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3. 최소 외국 재학·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

- 외국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외국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외국거주기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재외국민등록기간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 출국일로부터 가장 늦은 귀국일 사이의 기간
- 외국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 외국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당국가에서 거주한 기간

자격 구분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단위 : 연) () 안은 비연속통산기간							
	학 생			보호자			보호자의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2 (3)	2 (3)	2 (3)	2 (3)	2 (3)	1 (1.5)	-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3 (4)	3 (4)	3 (4)	3 (4)	3 (4)	1.5 (2)	3 (4)	1.5 (2)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2 (3)	2 (3)	2 (3)	-	2 (3)	1 (1.5)	2 (3)	1 (1.5)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3	3	3	-	-	-	-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12	12	12	-	-	-	-	-
새터민	제한 없음			-	-	-	-	-

- 위 기간은 보호자(부모)의 근무, 거주(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 거주(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은 학생의 기간 및 자격으로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
- 기간의 1.5는 1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 재학기간 산정 시 1년 2학기제인 국가의 경우 2년은 4학기를 의미하며, 1년 3학기제인 나라의 경우 2년은 6학기, 1년 4학기제인 나라의 경우 2년은 8학기를 의미합니다.

4. 자격인정 세부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불인정).
- 3) 보호자의 외국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 또는 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자녀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합니다(제3국 수학인증서 제출).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1) 보호자(부모)의 해외(근무)·거주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거주기간(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보호자(부모) 근무·거주와 학생의 재학·거주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2) 지원자의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학기계산)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3) 보호자(부모)는 역년(Calendar Year·연도계산)으로 외국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을 산정합니다.
- 4) 지원자의 외국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보호자(부모)의 근무(또는 거주)기간 부족분은 시작 시점 또는 종료 시점을 통산하여 최대 1개월까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의 경우 부족분 없이 해당 최소체류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 지원자의 재학기간 동안 보호자(부모)가 해당국가에서 근무 및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또는 거주) 기간이 지원자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 가) 지원자의 외국학교 전입일 이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지원자 졸업일(학적변동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나) 지원자의 외국학교 졸업일 이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졸업일이 속한 해당 학기말까지의 기간을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7)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을 외국 재학,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지원자 직계존속의 애경사 등으로 인한 방학 이외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인정합니다.
- 8) 전·입학, 편입학 시 국·내외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는 1개학기 이내에서 외국학기로 인정합니다.
중복이수한 경우 뒤에 이수한 학기를 외국학기로 먼저 인정하되, 1개학기를 초과한 중복이수학기는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에 편입 또는 국내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해당 외국 고교과정은 해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9) 월반의 경우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학기 이내에서 인정합니다(월반사유서 의무 제출).
- 10)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11)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학기 종료 기준일은 다음 학기 개시 전일까지입니다.
- 12) 외국학교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13) 학기 중간에 편입학(전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해당학기 성적이 모두 존재해야 인정합니다.

다. 자격인정 기준시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 분	지원자 재학·거주(영주)·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거주(영주)·체류 자격종료시점	비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19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19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19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필답 및 면접고사에 합격하여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라.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외국고등학교 재학·거주(영주)·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요국가 학제 및 총 수학기간

국가명	학제			총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중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미 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호 주	1-6학년	7-10학년	11-12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8학년)	1-4학년 (9-12학년)		10년 (12년)
말레이시아	1-6학년	7-11학년(초급 3년, 상급 2년)		11년
영 국	1-6학년	7-13학년		13년
뉴질랜드	Junior-2 Standard-4	Form 7-9	Form 10-13학년	13년

※ 필리핀의 경우 2018년 졸업자부터 12학년제 졸업자로 인정

마. 지원 자격 관련 유의사항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
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인정기준

(외국군무 재외국민/기타 재외국민/외국 영주교포의 자녀/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의 경우)

1)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 13년 이상 학제인 외국의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11년 6개월, 1개 학기 월반이 있는 경우 · 중복이수 학기 제외)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12년 학제인 외국의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11년 6개월, 1개 학기 월반이 있는 경우 · 중복이수 학기 제외)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12년 미만 학제인 외국의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 해당 외국의 학제와 관계없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총 수학기간이 12년에 미달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외국의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고교 졸업학력 불인정).

4)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23개학기
	외국학교																									
B	국내학교																									국내고교 졸업
	외국학교																									
C	국내학교																									국내고교 졸업
	외국학교																									
D	국내학교																									국내고교 졸업
	외국학교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E	국내학교																											13학년제 → 12학년제 혼합이수 13학년제 1년 하향
	외국학교 (13학년제)																											
	외국학교 (12학년제)																											

<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K	국내학교																									23개학기 미달
	외국학교																									
L	국내학교																									23개학기 미달
	외국학교																									
M	국내학교																									고교 1개 학년미달
	외국학교																									
N	국내학교																									11년제
	외국학교																									
O	국내학교																									23개학기 미달
	외국학교																									

나.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외국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년제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 ▶ 외국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1개 국가 내 학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혼합 이수한 경우 포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불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다만,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2학년까지만 이수한 경우 : 10~12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학년(학기)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제 간의 차이 학년(학기)

- 단, 외국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학 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1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수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월반 또는 조기졸업 관련 사유서를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기타

-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외국학교																									동일국 20개학기 (필리핀)
b	외국학교																									동일국 22개학기 (말레이시아)
c	외국학교1																									12년 학제 월반 후 졸업
	외국학교2															월 반										
d	외국학교1																									12년 학제 조기졸업
	외국학교2																							조기	졸업	
e	한국학교																									12년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학교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k	외국학교1																									월반 후 졸업(22개학기 미달)
	외국학교2													월 반	월 반											
l	외국학교1																									11년 이하 학제 조기졸업
	외국학교2																					조기	졸업			
m	한국학교																									국내학교 재학
	외국학교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구분	모집단위	전형형태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실기고사	면접고사	비고
일반 재외국민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 새터민	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학과	1단계	인문계/ 영화영상학과	국어 50%+ 영어 50%	-	-	5배수 선발
			자연계	수학 50%+ 영어 50%	-	-	
		2단계	1단계 성적 70%		-	30%	
	연극학부	일괄전형	-		100%	-	

2. 전형절차

가. 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학과



나. 연극학부



3. 필답고사(인문계·자연계·영화영상학과) 안내

가. 필답고사 범위

계열	과목	형식 및 범위	
인문계 · 영화영상학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등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EBS교재를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자연계	수학	수능 수학 '나'형 범위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공통	영어	수능 영어 범위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나. 필답고사 과목 및 문제유형

계 열	과 목	시 간	문항 수	문항유형	문항 배점
인문계 · 영화영상학과	영어 + 국어	80분 (휴식시간 없음)	영어 : 25문항(50점) 국어 : 25문항(50점)	4지선다형 객관식	각 문항별, 1~3점
자연계	영어 + 수학	100분 (휴식시간 없음)	영어 : 25문항(50점) 수학 : 25문항(50점)		

4. 면접고사(인문계·자연계·영화영상학과) 안내

면접위원 수		면접 시간	면접 형태
2인		10분 이내	개별면접
평가항목	전공적성	고사 당일 수험생이 작성한 '면접카드'를 참고하여 지망 전공에 대한 학업적 성과 기초수학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성·사회성	고사 당일 수험생이 작성한 '면접카드'를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인성·사회성·기본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연극학부 실기고사 안내

종 목	반영비율	내 용 설 명
즉흥극	50%	고사 당일 제시된 대사 / 장면 실연
특기	50%	지망 전공분야를 포함한 연극예술과 관련 있는 것으로 2분 이내로 실연. 단, 특기로 연기하는 것은 지양하며 뮤지컬전공 지망자는 뮤지컬 작품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하여 2분 이내로 노래

※ 실기고사 작품의 모든 대사와 노래는 한국어를 사용(외국어 사용 불가)

서류제출

1. 재외국민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 분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주요 교포의 자녀	외국취득 외국인 학생	12년 해외 전교육 과정 이수자	비 고
		공무원	상사 직원	외국 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정부 유치 과학교 수요원	현지 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 자	교육 출입 국 체류자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6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8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외국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 추천서			○	○							
11	외국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12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 투자신고 수리서 사본		○									
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4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사업기간 명기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에 납부증명서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 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 용서 및 보호자 세금납 입증명서 제출
17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 분 복사
18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기
19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	○	○	○	학생만	학생만	출입국관리사무소
20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	○	○	○		학생만	현지 영사관
21	주민등록말소등본								○			
22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23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중 국 공증처에서 공증한 가 족관계가 명기된 호구부)
24	국적관련사실증명서									○		국적이탈신고서, 제적등본 등 국적확인가능서류
2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 처에서 공증한 원본
26	외국국적 증명서 (학생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		
27	외국인 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28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
29	제3국 수하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30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	○	○	○	학생만	학생만	본교 소정서식
31	신분증 사본(학생, 부, 모)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보호자 와 학생만	○	○	○	○	학생만	학생만	

※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 서류 제출 시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2. 새터민 제출서류 목록

- ▶ 입학원서 1부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 학력증명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 고교졸업(예정)증명서(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새터민 대학교육 지원안내

가. 지원 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및 시행지침
- ▶ 관련 법령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 ▶ 학력인정 근거 법령은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92조·제9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 ▶ 아래 1), 2) 대상자가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합격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하나 합격 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 2)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 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인문·자연, 영화영상학과 지원자는 1단계 합격자만 서류를 제출하고, 예체능 연극학부 지원자(실기고사 응시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서류제출기간 이전에 제출한 서류는 분실염려가 있으므로 기간엄수 바랍니다.
- 나.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우리대학 입학관리실에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마.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사.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리대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카.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연수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혹은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28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중국은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이나, 현재 미 발효 국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처

-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 : <http://www.0404.go.kr>
- ▶ 영사콜 센터 : 02-2100-7500 / 02-3210-0404

4. 서류제출 절차

No.	구분	내용
1	서류제출대상자	▶ 인문/자연/영화영상학과 : 1단계 합격자(면접고사 응시자) ▶ 연극학부 : 지원자 전원(실기고사 응시자)
2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18. 7. 23(월) 10:00 ~ 7. 25(수) 17:00
3	제출처	▶ 제출처 : 동국대학교 입학처 세미나실(본관 2층) (※ 방문접수만 가능)
4	제출서류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입학원서"와 "서류심사지원서"(소정서식) 출력 ▶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격관련 서류 준비 ▶ "재외국민 제출서류 목록(p.15)"의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5	제출방법	▶ "입학원서"와 "서류심사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입학관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6	제출서류 확인	▶ 서류 확인 담당자가 현장에서 제출 서류 목록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완료 처리 ▶ 수험생이 원할 경우 접수확인서 발급

☀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1) 수시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횟수 계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계수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계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본교 학생부 종합 Do Dream/학교장 추천인재/불교추천인재,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논술/실기 전형에 각 1회씩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명	Do Dream	학교장 추천인재	불교추천인재/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논술 우수자	특기자(문학/SW/서양화/연기/영화영상/체육 일반/체육 선수)
지원가능횟수	1회	1회	1회	1회	1회

각 1회씩 최대 5회 (재외국민 포함 시 최대 6회) 본교 지원가능

2) 이중등록

-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최종적으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3) 합격취소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전형 및 등록 유의사항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답·면접·실기고사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신분증 미소지자 중 신분증명을 못한 자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조건 미달자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2)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제출된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 3)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4) 최종합격자 중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가 2019년 3월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
 - 5) 최종합격자 중 외국 고교 및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2019. 2. 21(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6) 합격(충원합격 포함)을 통보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모든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8) 필답, 실기 및 면접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고사 시작시간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편람] 준용 및 우리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 필답 · 면접 · 실기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직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응시방법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3. 수시(재외국민 특별전형)모집 충원합격

- 1) 수시(재외국민 특별전형)모집 미등록 인원은 수시 충원합격기간에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4. 온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1) 우리대학 수시(재외국민 특별전형)모집에 검정고시 합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또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를 입학 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고사장 안내, 합격 통보 메일/SMS 발송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원서접수 유의사항

- 1)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전자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 등의 수정이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는 학생부 종합 Do Dream/학교장 추천인재/불교추천인재,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논술/실기 전형에 각 1회씩 우리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포함 시 최대 6회).
- 3) 지원자 인적사항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4) 접수된 전형료는 전형기간 중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 1단계 불합격자,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5) 원서접수 시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기에, 원서접수 전 사진 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 6) '서류심사 지원서'의 출력과 원활한 학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교명과 재학기간, 외국학교 관련사항(E-mail, 전화번호, FAX)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7) 특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뒤 일곱 자리는 남자의 경우 "5000000", 여자의 경우 "6000000"을 입력하기 바랍니다.
- 8) 일반 재외국민/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새터민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면접고사 응시자)와 연극학부 지원자(실기고사 응시자) 전원은 서류제출기간에 제출서류 일체를 우리대학 입학관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처 (※ 방문접수만 가능)

서울캠퍼스 입학처 세미나실(본관 2층)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3호선/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6. 부정행위자 처리방침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기재누락, 허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を 취소합니다.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대학에 지원(응시)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를 통해 우리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입학(지원)을 취소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전형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3) 우리대학 및 타 대학에서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7. 인터넷 원서접수 문의

▶ 동국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실 : 02) 2260-8861

※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마감 시한 내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접수마감 시한까지 우리대학 입학처로 연락한 자에 한하여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PC 문제로 인한 미접수자는 제외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접수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순수외국인 지원자 유의사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우리대학 국제학생센터 (☎ 02-2260-3438)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1.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 ▶ 2018. 7. 5(목) 10:00 ~ 7. 7(토) 17: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접수방법

- ▶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guk.edu>)에 접속
- ▶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 ▶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 입학원서, 지원자 학력사항 등 입력
- ▶ 전형료 결제 전 입력사항 최종 확인 (※ 전형료 결제 후 변경이나 접수 취소 불가)
- ▶ 전형료 결제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등)
- ▶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입력, 결제 후 저장해야만 접수가 가능함.

3. 서류 제출 참조사항

- ▶ p.15~17 "서류제출" 항목 참조

4. 수험표 출력

- ▶ 수험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 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 합격자 사정원칙

1.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최종단계에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열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① 국어필답고사 성적 상위자 ② 외국학교 장기 재학자
자연계열	① 수학필답고사 성적 상위자 ② 외국학교 장기 재학자
연극학부	① 실기고사(특기) 성적 상위자 ② 외국학교 장기 재학자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자연계열의 1단계 성적 동점자는 2단계 전형대상자로 모두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답·면접·실기고사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신분증 미소지자 중 신분증명을 못한 자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조건 미달자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3.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제출한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4. 대학입학 전형성적이 우리대학이 설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최대선발 가능인원' 이내라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 ▶ 1단계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 시 원서접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분	모집단위	1단계 전형료(수수료 포함)	2단계 전형료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인문·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	65,000원	75,000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연극학부	110,000원	-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인문·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	65,000원	35,000원
	연극학부	70,000원	-

※ 2단계 전형료 납부자 중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전형료 환불 및 금액

- ▶ 전형료 환불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일반 재외국민 연극학부 : 8,000원, 그 외 : 5,000원)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 ▶ 접수된 전형료는 전형기간 중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으로 인한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 또는 지변 전형일자의 사후 변경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질병	▶ 필답고사 불참 : 30,000원 ▶ 실기고사 불참 : 75,000원 (※ 12년/새터민 : 35,000원) ▶ 면접고사 불참 : 75,000원 (※ 12년/새터민 : 35,000원)	▶ 왼쪽전형에 한함 ▶ 환불신청서(소정서식)와 병원장 발행 진료 또는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환불신청기간 : 필답/실기/면접고사일로부터 5일 이내 17:00까지
접수취소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환불
과오납	해당 금액	신청한 건에 한함

3. 환불방법

- ▶ 수험생이 입학원서 접수 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료 지출 잔액 발생 시 환불 안내

-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발생 시, 전형료 잔액을 2019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①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② 우리대학 직접 방문
-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등록포기

1.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발표방법
1단계 합격자 발표	2018. 7. 19(목) 예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게시
최초합격자 발표	2018. 8. 22(수) 이전	

2. 등록예치금 납부(합격자 등록)

- ▶ 납부기간 : 2018. 12. 17(월) ~ 12. 19(수) 16:00
- ▶ 등록예치금 : 400,000원
- ▶ 납부장소 : 우리대학 지정은행 전국지점
- ▶ 납부방법 : 우리대학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등록예치금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학교에서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방법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잔여 등록금 납부

- ▶ 납부기간 : 2019. 1. 30(수) ~ 2. 1(금) 16:00
- ▶ 잔여등록금 : 등록예치금 400,000원을 공제한 해당 모집단위의 잔여 등록금(입학금 포함)
- ▶ 납부장소 : 우리대학 지정은행 전국지점
- ▶ 납부방법 : 등록예치금 납부방법과 동일하며, 납부기간 전에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
- ▶ 등록예치금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4.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전형유형	발표일정		방 법
	1차	2차~최종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2018. 12. 26(수) 21:00까지 (수시 총원합격기간과 동일)		▶ 1차 총원합격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게시 ▶ 2차 ~ 최종 총원합격 - 개별통보

- ▶ 총원합격자 등록 : 2018. 12. 27(목) 16:00까지
- ▶ 총원합격자 등록은 총원합격 통보 시 등록기간 및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유의사항

- ▶ 2차 ~ 최종 총원합격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도 총원합격 통보 및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은행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도 등록금을 납부(인터넷 및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ATM 무통장입금 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에서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자세한 등록금 납부방법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예비합격순위자 중 총원발표기간 연락 두절로 총원합격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총원합격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자는 반드시 우리대학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예비순위자는 총원합격 통보 종료일인 2018. 12. 26(수) 21:00까지 여행을 자제하고 연락 가능한 곳에서 총원합격 통보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가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 환불, 합격취소

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 분	내 용
대상	우리대학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하여 등록하였으나, 입학전형 기간이 다른 타 대학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자 ※ 등록포기 시 이를 취소하거나 반복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기간	2019. 2. 19(화) 16:00 까지
신청방법 (본교 방문)	학생 본인 신분증(또는 보호자신분증) 및 기 납부한 등록금 영수증 1매를 지참하여 입학관리실(본관 1층) 방문 → 「등록포기원 및 환불신청서」 작성(본교 소정서식) → 입학관리실 접수 및 확인 → 지정 계좌로 등록금(예치금) 환불

※ 필히 환불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취소

- ▶ 우리대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의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합격취소 대상자 및 내용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 조건부 합격자 중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원서접수 시간순으로 수시 6회를 초과하여 원서접수한 자
- 전형 종료 후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 적발된 자
-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
-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자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 최종합격 처리 :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관리실로 제출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충족 시 합격 처리

장학제도

교내 장학

1. 불교대학장학

대 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불교대학 최종합격자	○수업료 50% ○8학기	○성적기준 - 평점평균 3.5 이상 -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복원기회 : 1회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중 불교대학 입학생은 불교대학장학 수혜대상

2. BMC특성화장학

대 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바이오시스템대학 최초합격자	○입학금 100%	○ 해당사항없음

3. 문학인육성장학

대 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장원	동국대학교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장원"수상자로 우리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	○수업료 100% ○4학기
우수	동국대학교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우수상"수상자로 우리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	○수업료 30% ○2학기
		○성적기준 - 평점평균 3.5 이상 -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복원기회 : 1회 (단, 문학인육성장학(우수)는 복원기회 없음)

4. 동국가족장학

대 상	장학금액	지급횟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부가 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하고 있는 자	학부 신입생 입학금 100%	1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부가 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 동시에 입학한 자	학부 신입생(1명) 입학금 100%	
직계 3대에 걸쳐 본교 학사과정에 신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학부 신입생(1명) 입학금 100%	
부와 모가 본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부부동문인 경우 그 자녀가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학부 신입생(1명) 입학금 100%	

5. 기타 교내장학

대 상	장 학 명
성적우수장학	수석장학, 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강좌별수석장학, 교육활동우수장학 등
복지장학	모범장학, 복지장학(1~2), 보훈장학, 기여장학, 교육보호장학, 근로장학, 종단추천장학 등
동국리더장학	동국리더장학
특기장학	공로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체육특기자장학, 전문자격장학 등
불교장학	종단추천장학, 종립학교장학, 군종법사장학, 불교미술장학 등
세계화장학	외국인장학, 교환학생장학, 해외탐방장학, 108리더스장학
대학미디어장학	동대신문사, 교육방송국, 동국포스트장학 등

6. 복지장학

장학명	대 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 고
복지장학1	본인 장애 1~2등급	수업료 100%	8학기	
	본인 장애 3~4등급	수업료 50%		
	본인 장애 5~6등급	수업료 30%		
복지장학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업료 100%		
보훈장학(본인)	보훈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입학금 100%	졸업 시까지	
보훈장학(자녀)		○수업료 100%	8학기	
교육보호장학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입학금 100% ○수업료 100%	8학기	

교외 장학

1. 불교청년지도자육성장학

총무원장장학 석암(내임정사)장학 수원사장학 능인선원장학	화엄승가장학 성찬회장학 정심행장학	영산불교장학 은정불교문화장학 청호불교문화장학	경국사장학 정각원장학(동국대정각원불자회) 봉은사장학	불자교수회장학(동국대교수신행단체) 보현회장학(동국대직원신행단체) 여의도포교원장학
---	--------------------------	--------------------------------	------------------------------------	--

2. 동문회장학(단체)

가정교육과후배사랑장학 건설환경공학과장학 건축공학과동문장학 경찰행정학부동문장학 국교후배사랑장학 국문학과동문회장학 국어교육과후배사랑장학 기여장학 대성강업장학 대원장학 도우장학 동감장학 동국장학 동우장학	동진장학연구재단장학 리첼장학 만해가사장학 만해국문과장학 목역장학 물리학과후배사랑장학 바이오교수장학 백상장학 법학과동문장학 벽담장학 부동산최고위과정동문장학 불교학생회동문장학 사학과후배사랑 사회학과기금장학	생협복지장학 생협우정장학 생협해외탐방장학 서봉바이오 재생의학 장학 선향장학 세원상사장학 수학과 장학 식물생명공학과장학 신한철강장학 약학대학 장학 에스원장학 여자총동창회 장학 역사교육과 장학 영산불교장학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 영어통번역전공후배사랑장학 원풍농연장학 윤리문화학과 장학 으뜸장학 의생명공학과 장학 이스타항공장학 일본학과장학 전자공학과동문장학 정각원신행장학 정각원연등장학 제자사랑장학 조소전공장학 직원노조장학	철학과 장학 총동창회건학이념장학 최고위치안정책과정장학 컴퓨터공학과 장학 코리아카파크장학 토토축구회장학 하이파킹장학 해산장학 행정학과 장학 현대건설재직동문회장학 형사법학회 장학 화공생물공학과 장학 30년 후배사랑 장학 ROT장학 ULTRA112장학
---	---	---	--	---

3. 동문회장학(개인)

고현정장학 권오철장학 김용길동문장학 김주한손용희장학	미산장학 박수호장학(경행) 박신양동문장학 박임순동문장학	서현장학 설재윤장학 이규원장학 이정재장학	이종범경무관장학 이해량장학 일현장학 장옥수장학	조허당장학 최준섭We장학
---------------------------------------	---	---------------------------------	------------------------------------	------------------

4. 장학재단장학

4.19기념장학 가송재단장학 경동송천장학 경신대회장학 고촌장학 관정이종환장학 관우장학 광주시민장학 교차로신문사장학 군포사랑장학 글로벌우체국장학 금강장학 꿈을나누는사람들장학 남대문로터리클럽장학 남산형제축구장학 노스페이스장학 노엽문화재단장학 농협문화복지장학 담오장학 대원장학회장학 대한전기협회장학 덕영장학 동방장학 동양증권장학	디오인터랙티브장학 러시앤캐쉬 행복나눔장학 로타리문화장학 롯데재단장학 메가스터디장학 문암장학 미래에셋국내장학 미래에셋장학 미래의동반자재단장학 박종윤로타리장학 백산장학 백운장학 백천장학 본술김종환장학 부남장학 산학협동장학 삼선장학 삼성고른기회장학 삼성품장학 삼송장학 상덕장학 상록장학 서울메트로장학 선도장학	선암장학 선현장학 설원장학 설송장학 성보장학 성옥장학 성찬회장학 송복은장학 송산장학 수원사랑장학 신라문화장학 신천개발장학 아산사회복지장학 아이레보장학 엘트웰민초장학 양영화장학 염곡문화장학 영풍문화장학 예은장학 오투기장학 오퍼스장학 용운장학 우덕장학 우석장학	우양재단장학 우학재단장학 유당장학 유정장학 은정불교문화장학 의송장학 이브자리장학 이스테파노장학 이웃린치과장학 인곡장학 일주학문문화장학 재암문화재단장학 전북꿈나무장학 정산장학 정석규관명장학 정수장학 정인옥학술장학 제넥스팜장학 직업능력개발학자금장학 창강재단장학 청곡장학 청소년을위한나눔재단장학 청탐장학 코바코자산신탁장학	코바코장학 큰사랑이한애장학 키움증권장학 평통여성장학 필정장학 하림장학 하정학술장학 한국대학봉사회 한국라이온스장학 한국로타리장학 한국유리육영장학 한국지도자육성장학 한화외국인장학 해성장학 형애장학 홍산장학 화강문화재단장학 화엄장학 ASEMDUO장학 CI엔터테인먼트장학 KSD나눔재단 장학 KT 창의혁신 장학 KT&G장학 S&T장학 With U장학
---	--	--	---	---

5.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

가평군애향장학 강남구장학 강남구학비지원장학 강서구장학 강릉소방서장학 거창소방서장학 공군장학 과천시애향장학 광명시애향장학	교육보호장학 국가근로장학 국제역량육성장학 김제시장학 김포장학 남양주시장학 남해소방서장학 단양장학 미래드림장학	미래로장학 보훈장학 부천시장학 사랑드림장학 삼척시애향장학 성남시장학 소방대원자녀장학 시흥시애향장학 안산장학	용인시장학 육군장학 은평구민장학 인천남동소방서장학 인천서부소방서장학 인천시애향장학 전북꿈나무장학 정부초청외국인장학 제주장학회장학	제천시장학 중구청장학 철원소방서장학 태백시민향토장학 평창군애향장학 평택시애향장학 포항시애향장학 해군장학 해외인턴십장학
--	--	---	---	---

6. 해외탐방장학

해외학술탐방장학	해외단체탐방장학
----------	----------

7. 한국장학재단 장학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사랑드림장학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인문100년 장학
------------	--------	-------------	-----------

8. 농촌희망재단 장학

희망브레인장학	희망자녀장학
---------	--------

FAQ

질문	답변
Q. 지원자가 방학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재학, 체류기간의 인정 여부	A.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자의 방학 중 한국방문기간을 재학, 체류기간으로 인정(포함)하되, 보호자(부모)가 방학 중 학생을 동반하였을 경우 보호자(부모)의 체류기간은 불인정
Q.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학기 종료 기준일?	A. 다음 학기 개시 전일을 학기 종료 기준일로 간주
Q. 외국에서 중학교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고등학교과정만 이수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일반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Q. 지원자가 유급하여 외국 고교과정을 1년 이상 재이수한 경우	A. 학제차이에 의하지 않은 중복이수는 전체기간 불인정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 시 최대 6개월<1학기>까지 인정)
Q. 지원자가 외국재학기간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보호자가 한국 발령 등의 사유로 근무거주기간의 조건을 미충족할 때 지원가능 여부	A. 보호자의 근무거주기간 부족분은 시작 시점 또는 종료 시점에 한해 최대 1개월 이내 부족할 경우에만 지원가능 (체류기간 조건은 해당기간 모두 충족해야 함)
Q. 12년 미만의 학제인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가능 여부	A. ① 외국고교 졸업 후, 24개학기에서 미달하는 기간만큼을 해당국의 대학과정에서 이수하여 최소 23개학기(11년 6개월 - 1개 학기 월반이 있는 경우. 중복이수학기는 제외) 이상이면 지원가능 ② 외국고교 졸업 후, 국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지원가능
Q. 13년제인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이상 수료하였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12학년 이상 수료 후, 최소 23개학기(11년 6개월 - 1개 학기 월반이 있는 경우. 중복이수학기는 제외)이상 수학하면 지원가능
Q. 기타 재외국민이 세금납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예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	A.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라는 증명서 제출 또는 세금납부를 면제 받았다는 증명서 제출
Q. 지원자의 외국재학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어떤 자격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A.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 가능. 다만,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Q. 지원자격 해당기간 중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A.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제출
Q. 외국의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재외국민전형 지원가능 여부	A. 지원 불가(한국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만 인정)
Q. 국내고교에 편입하여 졸업(예정)인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총 23학기 미만 이수한 자라도 국내고교에 편입한 후 졸업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Q. 제출서류를 우편/택배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 입학관리실로 직접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재외국민 일반전형> 지원자격 변경사항 안내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 합니다.
- ▶ 2021학년도부터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재외국민 일반전형'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의거하여 선발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 '재외국민 일반전형'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고 졸업자에 한함)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여권 사본(부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수험번호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동국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실
----	-------	-----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동국대학교 입학처)	성명	동국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실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입학처 입학관리실 02-2260-886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장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본인의 학적과 성적을 조회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Name : (_____)

School Address : (_____)

School E-mail Address : (_____)

School TEL : (_____), FAX :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

Student Full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admiss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graduat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I am the above person who is (or was) a student of your school. I have applied to Dongguk University in Korea for 2019 academic year and I have agreed that Dongguk University can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Dongguk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Date : 2018 . ____ . ____ .

Applicant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Office of Admissions ,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 82-2-2260-8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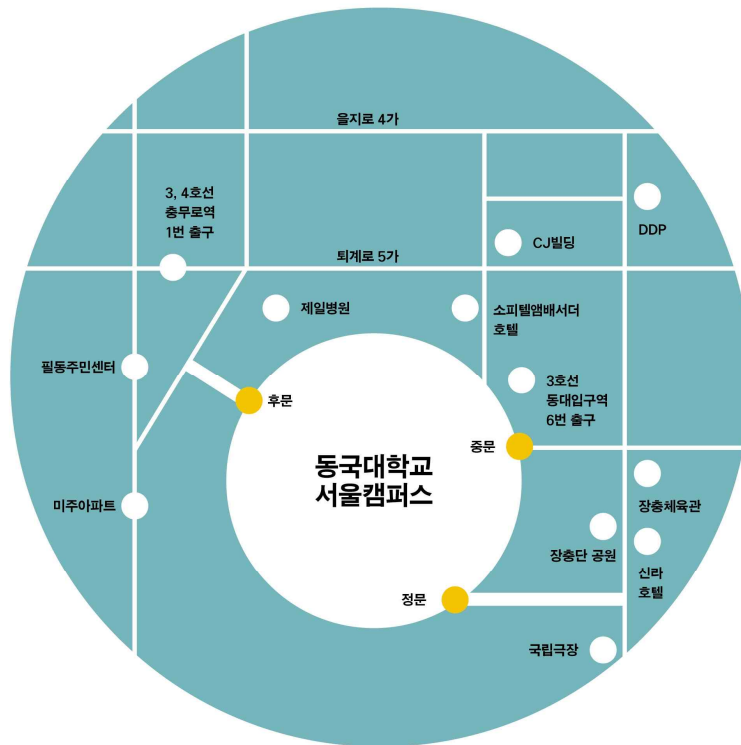
Fax : 82-2-2260-3696

E-mail : ipsi@dongguk.edu

Homepage : <http://ipsi.dongguk.edu>

외국학교 학력 및 성적조회 시 첨부할 지원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위 동의서의 ()안의 내용을 재학한 국가의 언어(영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재학한 학교의 수(초, 중, 고등학교 과정)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 간선버스 : 144, 301, 407, 420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자가용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 하는 경우는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